

서울특별시 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!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,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안은 자동차의 소음기·소음덜개의 제거 또는

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

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신고·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

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, 포상금의 범위는 위반행위의

과태료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○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,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